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현 동 (배재대학교 교수)

# 법제분석 요약

## 개요▶▶▶

- 국외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어학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4월말 현재 국제학교 총 4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다른 학교기관, 즉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은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여되고 있지 않아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및 비영리법인에 의한 투자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 양자의 교육기관간에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이유를 근거로 하여 주장될 수 있음. 즉, 비영리법인의 본질은 공익의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비과세 혜택의 근거는 곧 ‘공익제공의 장려’가 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와 다른 외국교육기관 등은 공익 제공이라는 본질과 기능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
-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 다른 외국교육기관 등이 받는 세제 혜택과 동등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법 제228조의2 신설,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150조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제시하였음.

# CONTENTS

I. 서론	4
II.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일반론	5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8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	10
III. 교육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11
1. 각급 교육기관의 종류와 관련 법률	11
2. 학교에 대한 세제 일반론	12
IV.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
1. 제주국제학교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	28
2. 국제학교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3. 법령 개정안	39

# 01 / 서론

- 국외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어학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4월 말 현재 총 4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치하는 국제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비영리법인)도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학교기관, 즉「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은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
-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여되고 있지 않아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및 비영리법인에 의한 투자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 본 연구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지 않는 현행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
  - II장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일반론에 대해 논의한 후 III장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과세제도를 고찰함.
  - IV장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함.

# 02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일반론

### 0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 1) 비영리법인의 유형과 본질

- 비영리법인은 i) 「민법」제32조<sup>1)</sup>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민법」상 비영리법인), ii) 사립학교 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그 주주나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특별법상 비영리법인), 그리고 iii)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간주법인」과 「승인법인」으로 세분)로 구분됨.<sup>2)</sup>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간주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음.<sup>3)</sup>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과 승인법인은 명시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하거나,<sup>4)</sup>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sup>5)</sup>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대해 판례 역시 이익분배의 금지에 있다고 설치하고 있음.<sup>6)</sup>
  - 여기서 이익분배란 잉여금이 발생할 때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 배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우 잉여재산의 분배까지를 포함함.<sup>7)</sup>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122~123면.

4)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6) 대법원 1978.2.14. 선고, 77누250 판결; 대법원 1978.3.14. 선고, 77누246 판결;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52 판결 등.

7)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91 판결.



- 한편,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의 영리행위는 수행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음.<sup>8)</sup>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판정은 법인의 실제 운영실태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견해<sup>9)</sup>와 판례<sup>10)</sup>가 있음.
  - 이에 따르면, 잉여금이 종국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되면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법인의 성격을 우리나라에서 판정할 때 실제의 운영실태와 경제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함.
  - 외국에서 그 나라의 준거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면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함.

## 2) 법인세법상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

### ① 관련 학설<sup>11)</sup>

#### 가. 공익장려보조금설

- 공익장려보조금설은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자선기간이 제공하는 공익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임.
  - 이는 미국의 종래 통설이면서 미연방대법원의 입장임.
- 미국 내국세입법 제501조(c)(3)조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기관의 설립과 운영목적으로 8가지를 내세우고 그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8가지 목적이란 종교, 자선, 과학, 치안점검, 문예, 교육, 국내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경쟁육성, 아동이나 동물학대 금지를 말함.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목적을 포괄하는 개념은 ‘자선’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내국세입법 제501조(c)(3)조의 입법취지가 자선기관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한 바 있음.<sup>12)</sup>

8)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광교이텍스, 2014, 77면.

9)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5, 395면.

10) 대법원 1986.10.14. 선고, 84누430 판결.

11) 해당 내용은 이재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조세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8, 320-328면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12) 461 U.S. 574, 587~588.





- 따라서 앞의 8가지 목적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단체가 자선기관이 된다는 것임.

#### 나. 소득과세불적용설

- 소득과세불적용설이란 비영리기관에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 순소득 개념과 같은 소득과세의 기본 전제조건을 비영리기관에게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견해임.<sup>13)</sup>
- 소득이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서 공익기관은 소득을 실현하고 있지 않는 까닭에 소득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
  - 수입측면에서 공익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를 증여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
  - 지출측면에서는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지출은 미국 내국세입 제162조의 사업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따라서 비영리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통상적 사업경비(ordinary and necessary business expens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당해 학설은 앞서 공익장려보조금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한계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음.
  - 즉, 자선의 구체적인 의미가 모호한 탓에 법령상 열거되어 있는 정의만으로 자선 목적과 그렇지 않은 목적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긋기 어렵고, 따라서 자선기관의 범위도 확정짓기 어렵다는 논리임.

#### 다. 자본형성보조금설

- 자본형성보조금설은 비영리기업의 입장에서 이익분배의 금지로 인해 자본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면 이익잉여금을 통한 자본형성을 장려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영리기업에 대한 비과세는 곧 자본보조금(capital subsidy)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임.
- 당해 학설은 공익장려보조금설과 소득과세적용불가설에 대해 모두 비판적임.

13) Bitter, Boris I. & Rahdert, George K., "The Exemp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Federal Income Taxation", 85 Yale L. J. 299 (1976), p. 333.



- 예컨대, 자선기관과 동일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영리기업이 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자선기관에 대한 비과세금액이 순소득과 연계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익장려보조금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 ② 정리 및 평가

- 종래 역사적 연원과 정부실패라는 이론적 측면에서 공익장려보조금설이 유력한 학설이었음.
- 소득과세불적용설은 소득과세의 기본 틀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바르지 않다고 주장한 견해임.
- 한편, 자본형성보조금설은 비영리법인의 존재 의의가 공익장려보조금설이 전제하는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라는 경제학적인 분석의 기초에 터 잡아 비영리법인의 이익분배의 제한으로 인한 자본형성의 제약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학설임.
-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립된 학설은 없음.
- 우리나라의 문헌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본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결국 공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므로 과세하지 아니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sup>14)</sup>
  - 비영리법인의 본질이 공익의 제공에 있다는 것이므로 비과세혜택의 근거는 곧 ‘공익제공의 장려’가 됨.

##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각각 부담함.
-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추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1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8, 561면





-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은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공익법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을 포함하여 특별법 등에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공익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보다 좁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상증법상 과세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sup>15)</sup>의 순으로 크기가 큼.<sup>16)</sup>

15)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16) 윤현석,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법연구 제14권 제2호, 2008, 297면.



### 0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sup>17)</sup>
  -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공익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하략>

-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을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당해 법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관해 규율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좁혀 잡고 있음.

17) 공익법인법 제2조.



# 03

## 교육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 01 각급 교육기관의 종류와 관련 법률

-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sup>18)</sup>이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세분됨.
  - 각종학교에는 외국인학교가 있음.
- 설립주체에 따라서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됨.<sup>19)</sup>
  -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사립학교는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를 의미
  - 특히,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의 확보와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음.
  -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중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기타 사인이 설치한 학교를 의미함.
-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외 외국교육기관법에 규정된 외국교육기관(제4조)과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제학교(제223조)가 있음.
-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함.

18) 실정법상 국제학교는 유치원·초·중·고 과정으로 하고 있으므로(제주특별법 제223조 제2항) 「고등교육법」은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9) 초·중등교육법 제3조.



-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함.
-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국가·제주자치도·제주특별법, 다른 국내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임.<sup>20)</sup>
  - 따라서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국제학교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음.

〈 표 〉 교육기관의 유형과 설립 및 운영주체

구분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유형	국·공립	사립	사립	사립	국·공립 및 사립
설립·운영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 학교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비영리인 외국학교법인	- 국가 - 제주특별자치도 - 국내의 법인 (영리법인 포함)

## 02 학교에 대한 세제 일반론

### 1) 개요

- 학교에 관련된 세목으로는 법인세 외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우선 개인이나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 상속이나 증여의 형식을 통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관련됨.
- 한편, 학교 운영단계에서의 과세문제로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법상의 처리, 학교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와 학교법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세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관련됨.

20) 제주특별법 제225조.





- 학교의 재산취득이나 등록, 보유 등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발생함.
- 이하에서는 각 세목이나 특정 단계에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 상술하도록 함.

## 2) 재산출연

- 개인이나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이나 증여의 형식을 통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관련됨.
- 상증법상 비영리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함.
  - 상증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자로 거주자와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규정하고 있음(제2조).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sup>21)</sup>
- 상증법 제16조와 제48조에 따르면 상속·증여재산 중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등에 학교법인이 포함됨.
- 상증법 제12조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는 중고등학교, 각급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 각종 학교를 말하므로 설립 주체와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상증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음.
  - 하지만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과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는 당해 법령에 열거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대상이 아님.

## 3) 기부

- 학교를 비롯한 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는 자는 일정한 금액을 법인세 법상 손금이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음.

21) 상증법 제16조 제1항.



- 먼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학교법인의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up>22)</sup> <중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2【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하략>

-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i)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ii)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
- i)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ii)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됨.
- 기부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손금한도의 차이를 야기하는 점에서 기부금 종류의 구별 실익을 찾을 수 있음.
  - 법은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각각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음.<sup>23)</sup>
- 개인의 기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3)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기부금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과 큰 틀에서는 거의 같고, 특히 학교 법인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 다만, 상술한 공제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별 공제금액의 계산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을 따를 경우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각각 한도로 함.
  - 한편,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4) 학교 운영수익

- 법인세법은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 여기서 말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함.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중략>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하략>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순자산증가설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비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구분지어 살펴보아야 함.
-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sup>24)</sup>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줄일 수 있음.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sup>25)</sup>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 소득의 금액

24) 정확하게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썼거나 쓰기 위해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손금으로 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를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56조 제7항.

25) 구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수익사업 중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어 비영리법인이 이 선택권을 행사한다면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이 최종적인 세 부담이 됨.<sup>26)</sup>
- 한편, 주식이나 토지와 건물 등의 고정자산의 양도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sup>27)</sup>

## 5) 교육용역과 급식

-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과 급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sup>28)</sup>으로 정하고 있음.<sup>29)</sup>
- 한편, 법은 면세와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소비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적 효과를 창출함.
-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6)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27) 법인세법 제62조의2.

28) 재화의 수입의 경우 사업자 여부를 불문한다.

29) 부가가치세법 제4조.



1.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익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하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하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가 적용됨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면세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 한편, 급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30)</sup>

30) 다만, 이는 한시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중략>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략>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외국교육기관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선 관련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료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473, 2011.11.30.]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제 목]

국제학교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예규는 앞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서 규정되는 학교인지를 소관부처로 문의를 해서 바른 해석을 하라는 것임.
-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는 포함되고 있지 않음.
  - 다만, 학교급식법 제4조 제3호에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라고 해서 교육감이 인정한다면 각종학교는 학교급식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외국교육기관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sup>31)</sup>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이를 위임함을 규정하고 있음.

31)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등기 등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6) 교육비 지출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sup>32)</sup>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종전에는 소득공제항목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나,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로 전환된 바 있음.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인학교를 비롯하여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에 납입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중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하략>

32)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 7) 세금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략>
  -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한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등에 따라 면제하거나 지정일로부터 10년간 각각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략>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하고, 재산세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  
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후)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  
(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 국제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  
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면제한다.

- 국제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표 〉 교육기관에 대한 과세의 개요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학교에 대한 재산출연	상속세·증여세(습제12조)	비과세	비과세	과세	과세
학교에 대한 재산기부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법정기부금)	비과세(법정기부금: 교육비 등) (지정기부금: 기타)	비과세(법정기부금: 교육비 등)	과세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학교운영 수익	법인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한시적 감면)	과세 (한시적 감면)
이자소득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특례 적용 안 됨	특례 없음
양도소득		비과세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특례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과세 (손금산입)	비과세 (손금산입)	과세 (손금산입 불허)	특례 없음
교육용역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부가용역 (급식)	부가가치세	면제	면제	과세	과세
지방세	취득세 등	면제	면제	비과세 (일부세목은 감면)	과세 (일부세목은 감면)

# 04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01 제주국제학교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

#### 1) 추진배경

- 해외 및 조기 유학으로 인해 유출되는 국부와 그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었음.
  - 유학연수 비용이 2001년 ~ 2006년까지 매년 30% 이상 증가
  - '06년 유학연수 비용 45억불은 서비스수지 적자 190억불의 20% 상회
    - '08년도 기준 유학수지 적자 60.5억불로 '07년 49억불 대비 23% 증가
  - 초·중·고 유학연수생 : '01년 26,676명 → '06년 45,431명(1.7배 증가)
-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어과의 등 사교육비는 연간 15조원('06년)으로 세계 최고수준
  - 반면, 세계 TOEFL 응시자의 19%가 한국인이나 성적순위는 111위('06년도)로 중하위권
- 이러한 배경에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음의 효과를 기대하였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반 조성
    - 해외유학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시키기 위한 특색 있는 영어상용화 공간 마련
    - 제주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청정·무공해 산업으로서 향후 제주자치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
    - 중·동남아 해외유학생을 유치하여 동북아시아의 교육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제주도 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 토대 마련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과 도내 학교들과의 다양한 공교육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내의 일반계 학교 학생들이 외국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 제공
- 대규모 투자와 정주형 도시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 인구유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효과와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유발효과도 유의미하게 발생할 것을 기대
- 외화절감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2023년 학생 9,000명 재학 시 연간 6억 달러의 외화절감을 기대(1인당 67,051 달러)

## 2) 운영현황

- 2016년 4월말 현재 총 4개교(정원 3,982명)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표 〉 국제학교 세부현황

구분	한국국제학교 (Korea International School)	KIS high school	NLCS Jeju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BHA (Branksome Hall Asia)
설립별 운영법인	설립:공립(초·중) 운영:사립 (주)YBMJIS운영위탁	사립(교) (주)YBMJIS	사립 (주)해울 (JDC자회사)	사립 (주)해울 (JDC자회사)
개교일	2011. 9. 19.	2013. 8. 19.	2011. 9. 26. 유·초·중· 고등학교(통합)	2012. 10. 15. 유·초·중· 고등학교(통합)
	유·초·중·고등학교(통합)			
학급 및 정 원 수	37학급(PK-8년) 782명	24학급(9-12학년) 480명	74학급(N-13학년) 1,508명	60학급(JK-12학년) 1,212명
학생수/ 학급	481명/ 29학급	250명/14학급	1,006명/57학급	694명/41학급 ※ PYP4 부터 여학 교로 운영
교원수(현)	109명 (교사 89, 기숙사 사감 20)	62명 (교사 33, 기숙사 사감 29)	132명 (교사 90, 기숙사 사감 42)	95명 (교사 68, 기숙사 사감 27)
부지면적	39,061㎡	37,064㎡	104,385㎡	94,955㎡
건축면적 (연면적)	10,692㎡ (28,899.65㎡)	10,658㎡ (31,246㎡)	32,917㎡ (96,609.53㎡)	32,819.84㎡ (70,211.38㎡)



구분	한국국제학교 (Korea International School)	KIS high school	NLCS Jeju (North London Colledge School Jeju)	BHA (Branksome Hall Asia)
교육과정	미국 AERO(American Education Reaches Out) 교육과정		영국 NLCS 본교 교육과정	IB 교육과정
국제인증 과정도입	*WASC 인증		*IB 인증	IB 인증
학력인정	국내·외 학력 인정		국내·외 학력 인정	국내·외 학력 인정

\*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미국서부교육연합회의 약자로서 미국 내의 공·사립학교 및 대학교 등의 공신력 있는 평가를 담당하는 학력인증기구 중의 하나임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 IB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력인증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력과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목표로 고안된 프로그램

〈 표 〉 국제학교 학생 및 학급현황(16년 4월 기준)

국내학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학년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원	38	78	118	164	184	206	206	206	382	382	440	406	406	392	374	3,982	
현원	35	56	96	124	145	147	112	156	200	213	266	306	239	192	144	2,431	
충원률(%)	92.1	71.8	81.4	75.6	78.8	71.4	54.4	75.7	52.4	55.8	60.5	75.4	58.9	49.0	38.5	61.0	
K I S	학제	Elementary							Middle			High			계		
	학년	-	PK	K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급	-	1	1	2	3	3	2	3	4	4	6	4	4	3	3	43
	정원	-	20	20	40	60	60	60	60	154	154	154	120	120	120	120	1,262
	현원	-	13	19	34	48	46	38	56	70	60	97	77	69	52	52	731
	충원률	-	65.0	95.0	85.0	80.0	76.7	63.3	93.3	45.5	39.0	63.0	64.2	57.5	43.3	43.3	57.9
N L C S Jeju	학제	Junior							Middle			Upper	Sixth Form	계			
	학년	N	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급	1	1	2	2	2	3	2	3	4	6	6	7	6	6	6	57
	정원	22	22	44	44	44	66	66	66	132	132	176	176	176	180	162	1,508
	현원	21	19	37	32	44	52	43	66	83	107	113	144	97	91	57	1,006
	충원률	95.5	86.4	84.1	72.7	100	78.8	65.2	100	62.9	81.1	64.2	81.8	55.1	50.6	35.2	66.7





B H A	학제	IB PYP (Primary Years Program)								IB MYP (Middle Years Program)						IB DP (Diploma Program)	계
	학년	JK Pre	JK	SK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급	1	2	3	4	4	3	2	2	2	2	3	4	4	3	2	41
	정원	16	36	54	80	80	80	80	80	96	96	110	110	110	92	92	1,212
	현원	14	24	40	58	53	49	31	34	47	46	56	85	73	49	35	694
	총원률	87.5	66.7	74.1	72.5	66.3	61.3	38.8	42.5	49.0	47.9	50.9	77.3	66.4	53.3	38.0	57.3

〈 표 〉 국제학교 출신지역별 학생수(16년 4월 기준)

구분	서울	경기	제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귀국	해외	계
KIS	208	110	130	32	11	8	5	9	2		7	16	20	27	93	53	731
NLCS	351	144	124	60	12	10	16	12	10		2	16	19	28	65	137	1,006
BHA	201	113	83	27	9	5	9	8	6		8	18	9	20	56	122	694
총계	760	367	337	119	32	23	30	29	18		17	50	48	75	214	312	2,431
비율(%)	31%	15%	14%	5%	1%	1%	1%	1%	1%	0%	1%	2%	2%	3%	9%	13%	100%

## 02 국제학교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법인세법

#### ① 문제점

-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어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용역임.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입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용역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임.

- 해당 조문에는 국제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실정법상 법인세가 과세됨.
- 다른 학교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입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줄일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함.
- 그렇다면 국제학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세금을 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다음의 이유로 국제학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 법에서의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각 호에서 다시 명시하고 있음.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중의 하나로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에 국제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지출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정리하면,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됨.
- 기부와 관련하여 국제학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단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
  - 사립학교, 특히 외국교육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되는 것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장이나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

## ② 개선방안

### 가. 운영수익에 대한 과세

-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국제학교의 운영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됨.
- 이는 현재 다른 교육기관이 학교 운영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법인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sup>33)</sup> 교비회계 잉여금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sup>34)</sup>
  - 따라서 이익분배는 현행법상 이루어질 수 없음.
- 한편,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됨.<sup>35)</sup>
  - 잔여재산의 우선 귀속권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임.<sup>36)</sup>
  -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는 법인에 따라 다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못함.

33) 제주특별법 제231조 제1항.

34) 제주특별법 제231조 제3항.

35)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제2항.

36) 민법 제80조 제1항.



-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음<sup>37)</sup>.
- 이상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도 처분할 수 없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됨.<sup>38)</sup>
- 결국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운영과 해산에서 구성원이 이익을 분배받을 길이 없고 이러한 점에서 다른 교육기관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
-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운영수익 과세는 다른 교육기관과 같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
  -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열거되는 것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생각은 지지를 받음.
- 입법론으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각호의 사업에 국제학교를 추가하는 규정방식이 필요할 것임.

#### 나. 기부금

- 현행법이 기부하는 자가 기부를 손금이나 필요경비,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기부를 받는 자나 단체가 공익활동을 하기 때문임.
- 공익단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포섭할지는 아직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 국제학교를 기부금 공제대상단체로 볼 수 있을지는 실정법에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띤 단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당위를 우회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임.
- 사립학교, 특히 외국교육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점,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이 지정기부금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제학교는 일응 기부금공제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37) 민법 제80조 제2항.

38) 법 같은 조 제3항





- 구체적으로 국제학교가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국제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① 문제점

- 상속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익법인의 하나로 교육법상 학교가 포함됨.
- 하지만 국제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역시 상속법상 공익법인으로 열거되고 있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다른 학교기관은 재산출연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국제학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까닭에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이는 설립단계에서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비영리법인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비영리성에 더하여 공익성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한다는 견해가 있음.
  - 비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국제학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의 공익성을 입증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하지만 상속법상 공익법인의 요건을 위 견해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물론 실정법상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은 상속법상 공익법인보다 그 범위가 넓음.
  - 그런 범위의 차이를 상속법이 법인세법에 비해 추가적인 요건, 즉 공익성을 적용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 설득력이 부족하고 논거가 충분치 않아 타당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외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재산을 출연 받은 단체에게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 모두 공익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임.
- 그러므로 둘(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공익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차이가 타당한 논거에 의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음.
- 개념적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의 정의가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존재할 수는 없음.<sup>39)</sup>
  - 물론 그 개념의 실무적인 활용 측면에서 어떤 것을 공익의 범위로 포섭할지, 다시 말해 어떤 단체를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볼지 구체적 범위의 설정에 있어 규정 간 일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sup>40)</sup>
- 하지만 원칙적인 기준 내지 객관적 기준의 확립은 필요하며 따라서 그 기준에 크게 어긋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의 타당성은 결여될 수밖에 없음.
- 본 논의로 돌아와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과 상증법의 공익법인 범위의 불일치를 단지 세목이 다름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논거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 상증법의 공익법인 등이 받는 재산출연은 해당 법인의 활동을 위한 수입원, 즉 소득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증여세 역시 법인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이 말의 뜻을 잘 보여줌.
  - 영리법인이 자산을 무상이전 받을 경우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sup>41)</sup>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음.

39) 사안별로 또는 입장별로 공익의 개념이 다르다면 공익이 아닌 사익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만다. 물론 공익성 자체의 개념적 한계는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Bittker, Boris I. and Rahdert, George K., "The Exemp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Federal Income Taxation", 85 Yale. L.J. 299 (1976), pp. 330-333을 참조. Bittker와 Rahdert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공익성 개념의 불확정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지만 공익과 관련된 규정 간의 불일치에 대해서 논한 바는 없다.

40) 예컨대, 미국 IRC §170(c)에서의 공제대상인 단체와 IRC §501(c)(3)에 의한 연방소득세 면제 단체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에 대한 하나의 잣대가 적용되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 미미한 범위의 차이가 있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 대신 비영리법인에게는 상증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짐.<sup>42)</sup>
- 입법론으로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무상이전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원칙적으로 하나의 잣대가 적용됨이 바람직함.<sup>43)</sup>

## ② 개선방향

-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과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계산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 공익의 개념을 다르게 둘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실익도 없음. 상증법 제2조 제1항.
- 국제학교를 상증법상 공익단체에 포함시켜 출연 받는 재산을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 3) 부가가치세법

### ①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가 적용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면세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 국제학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나 등록을 요하므로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 다만, 국제학교가 제공하는 급식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서 규정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면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42) 상증법 제2조 제1항.

43)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되고 있다(공익법인법 제2조). 따라서 공익법인법에서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 ② 개선방안

- 실정법의 해석상 국제학교가 제공하는 급식을 면세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통해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만약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의 면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국제학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음.

## 4) 지방세법

### ① 문제점

- 국제학교를 제외한 학교기관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받고 있음.
- 국제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면제함.
-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학교에 외국교육기관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② 개선방안

- 다른 학교가 받는 지방세 감면혜택 수준과 동일하게 국제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03 법령 개정안

### 1) 제주특별법 제22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228조의2(국제학교에 대한 조세특례) 이 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제4호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 2) 「법인세법」 제24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p> <p>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 략)</p> <p>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 라. (생 략)</p> <p>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p> <p>바. ~ 자. (생 략)</p> <p>5. ~ 7.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p> <p>바. ~ 자. (현행과 같음)</p> <p>5. ~ 7.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p> <p>1. ~ 2의2. (생 략)</p> <p>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p> <p>4. ~ 15. (생 략)</p>	<p>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 ----- ----- -----.</p> <p>1. ~ 2의2. (현행과 같음)</p> <p>3. ----- ----- ----- <u>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운영하는국제학교와</u> ----- -----</p> <p>4. ~ 15. (현행과 같음)</p>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p> <p>1. (생 략)</p> <p>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p> <p>3. ~ 11. (생 략)</p>	<p>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p> <p>3. ~ 11. (현행과 같음)</p>







## 6) 「지방세법」 제150조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p>	<p>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p>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6-21-②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16년 10월 31일

발행인 이 익 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